

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[] 고용
[] 고용관계 종료 신고서
소속공인중개사 [] 인장등록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즉시					
신고인	성명(대표자)	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)					
	주소(체류지) (전화번호:)	휴대전화번호:)					
개업공인중개사 종별	[] 법인 [] 공인중개사 []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						
중개사무소	명칭	등록번호					
	소재지 (전화번호:)	휴대전화번호:)					
고용인 인적사항	구분	고용일 또는 고용관계 종료일	성명	주민등록번호 (외국인등록번호)	주소 및 전화번호	자격증 발급 시·도 (공인중개사)	자격증 번호 (공인중개사)

「공인중개사법」 제15조·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·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유의사항	(소속공인중개사 등록인장 인)
1.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 신고를 하는 경우 「공인중개사법」 제5조제2항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발급한 시·도지사에게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. 2.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「공인중개사법」 제10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여부와 같은 법 제3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교육 수수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.	

처리절차								
신고서 작성 신청인	→	접수 시·군·구 (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)	→	검토 시·군·구 (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)	→	결재 시·군·구 (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)	→	완료 시·군·구 (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)

